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 추가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7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제221057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 추가(안 제107조제3항)	2

I.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제221057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22.

다. 회 부 일 : 2025. 5.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 추가(안 제10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조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107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농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u> ----- ----- ----- -----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¹⁾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법²⁾ 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³⁾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복지 분야 또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가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장애인등의 접근권 분야의 전문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등의 접근권 분야 전문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군계획 등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⁴⁾에 근거한 접근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심의·의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촉 대상 분야의 예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 위촉 시 법률에 명시된 분야로 위촉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교통·보행약자 등 다양한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고 있어 위촉 대상 분야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